의안번호	2216069
의 뢰 인	김정재의원
회 답 일	2026.3.25.
추계번호	26B02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장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억 5,600만원 등 5년 동안 총 47억 1,300만원(연평균 9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 제37조제3항 신설 (부담금의 산정기준)	2,356	-	-	2,356	-	4,713	943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제3항 신설 (부담금의 산정기준)	시장은 제2항[1]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37조제3항 신설 (부담금의 산정기준)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시장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특정하기 곤란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단위에서 3년 주기로 부담금 산정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조사가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함

○ 연구용역 사업비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연구용역 사업비의 평균 수준으로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대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전국 54개 시 단위에서[2] 3년마다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별 타당성 재조사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이 3년 주기로 관련 연구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54개 시[3]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와 46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54개 도시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54개 도시)에서 부과되고 있음

[표 2] 추계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 수

(단위: 개)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방자치단체 수	54	-	-	54	-

주: 교통유발부담금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은 대상 지방자치단체 54개 시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3년 동안 균분(매년 18개 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사업비 단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용은 유사사례의 평균사업비를 참고하여 추정함

○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관련 연구 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평균사업비는 광역자치단체 1억 3,700만원, 기초자치단체 2,74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본 추계의 연구용역 단가로 활용함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3]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관련 주요 연구용역 사업비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발주기관	연도	사업비
광역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23	147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4	98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9	140
	표준교통량 및 교통유발계수 산정방안	서울특별시	2009	95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2022	250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2022	90
	평균			137
기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용역	부산시 강서구	2025	18.5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서울시 서초구	2021	45.6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개선방안	경기도 부천시	2020	18.2
	평균			27.4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시장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3억 5,600만원 등 5년 동안 총 47억 1,300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방자치단체 수(개소)		54	-	-	54	-	-
	광역(a, 개소)	8	-	-	8	-	-
	기초(b, 개소)	46	-	-	46	-	-
사업비 단가(백만원)							
	광역(c, 백만원)	137	-	-	137	-	-
	기초(d, 백만원)	27.4	-	-	27.4	-	-
합계(a×c+b×d)		2,356	-	-	2,356	-	4,713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된 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방자치단체 현황[4)]

❑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 중(인구 10만명 이상 54개 도시가 해당)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총 8개시)
- ○ 경기도(21개), 강원특별자치도(3개), 충청북도(3개), 충청남도(2개), 전북특별자치도(3개), 전라남도(3개), 경상북도(5개), 경상남도(5개), 제주특별자치도(1개) 등 총(46개시)

4) 국토교통부 제출자료